

#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## 1.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8년 12월 3일
- 나. 제 출 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'98년 12월 3일
- 라. 상정및의결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  
제6차 사회도시위원회(1998년 12월 22일) 상정 의결

## 2.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교통과장 조택용

### 가. 제안사유

-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설치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비용을 본 조례  
세입으로 정하여 재원확충을 도모하고,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 
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  
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 
코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세입의 추가신설(안 제2조 제6호)
  -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 
비용의 납부금
- 세출용도의 추가신설(안 제3조 제5호)
  -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 
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

### 3.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

#### - 전문위원 전 영 회

- '95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5장제19조제5항에 의하면 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었으며
-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
- 또한 동법 제6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필요한 사항 (보조의 대상, 방법 등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
- 본 광주광역시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(세입)부분은 주차장 조례개정안 제13조에 의거 추가 신설하였 음은 바람직하게 생각되며,
- 제3조(세출)부분은 주차장 조례개정 조례안 제17조에 의거 내집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세출항목을 신설한 것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 습니다.  
그러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세입·세출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#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8년 11월 일  
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설치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비용을 본 조례 세입으로 정하여 재원확충을 도모하고,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세입의 추가 신설(안 제2조제6호)
  -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
- 세출용도의 추가 시선(안 제3조제5호)
  -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췌(주차장법, 지방재정법)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##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을 납부금

제3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2조(세입) 1~5(생략) (신설)	제2조(세입) 1~5(현행과 같음) 6. <u>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</u>
6. (생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3조(세출) 1~3(생략) (신설)	제3조(세출) 1~3(현행과 같음) 4. <u>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</u>
4.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4조(잉여금의 처리)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5조(예비비)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6조(준용)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7조(시행규칙)(생략)	(현행과 같음)